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50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41호	백승아의원	2024. 7. 5.	○제41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8.)
	제3912호	정성국의원	2024. 9. 1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024. 11. 19.)
	제5847호	서지영의원	2024. 11. 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 소위 회부(2025, 2, 4,)

-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6.)는 이상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2. 18.)는 이상 3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교육부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우려가 있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제18조의5 및 제20조의2 등).

한편,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 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할 수 있다.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 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3.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8조제1항제1호 중 "지적"을 "정서·행동문제, 지적"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절> ○시 설> 시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생 략)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 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 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 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 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 · 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 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현 행 제18조의5와 같음)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 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 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 ② (생략)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학생생활지도) ① (생 략)

<신 설>

<신<u>설></u>

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 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 음)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 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 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 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 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 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 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필 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 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신 설>

<u><신</u>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

 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

 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신 설> 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 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
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

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 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 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①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 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신 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기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격장애나 <u>지적(知的)</u> 기능
 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

<u>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u>
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
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
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
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
생에 대한 교육) ①
,
1 <u>정</u> 서 · 행동문제,
ار ا

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3. (생 략) ② ~ ⑩ (생 략) <신 설>

2.·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 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 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 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 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 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